



무주택 확인서

본인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저축의 가입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본인, 배우자,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 제2항 및 제87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았던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금주 (본인) :

인 또는 서명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제출시〉

☞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을 대리인은 서명만 추가하여 대리제출하는 것임.

위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서명(날인)하여 본인의 (가족관계) 인 (성명) 을(를) 통해 제출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예금주 (본인) :

인 또는 서명

대리(수입) 인 :

인 또는 서명

- 대상 : ①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모두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 ② 통장 가입기간(신규일 및 전환신규일)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 ③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 상 총급여액(근로소득자)이 3천6 백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자) 2천 6 백만원 이하인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 가입대상 기준과 비과세가입대상 기준 상이하므로 유의
- 한도 : 연간 납입금액의 6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